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6판 보충(Version2)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6판 보충자료 입니다.

1. 본 서 출간이후 선고된 최신판례를 보충하였습니다. 선고된 최신 판례 중에서 기존의 법리와 내용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내용만을 반영하였습니다.

- p. 13. 수정

- p. 13. 추가

- p. 116 추가 – 관련문제

- P. 132 추가

2. 일부 오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 p. 52 수정

- P. 158 수정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남 변리사 올림.

p. 13. 수정

(4) 거래서류

가.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2 조 제 1 항 제 11 호 다목).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 후 10265 판결_ CONTOUR COIL 판례).

p. 13. 추가

(4) 거래서류

마.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 후 10265 판결_ CONTOUR COIL 판례).

p. 52 수정

|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예 |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예 | |
|---------------------------|-------------------|------------------------------|
| |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되는 경우 | 특정인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경우 |
| 가, 나, 취, A, B, AB, e 등 | 닭, 별, 해, 용 | LG, CJ, GS, HP, NH, KT, SK 등 |

p. 116 추가 – 관련문제

3.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자 사이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가.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과 사용, 관련 쟁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3 호는 이미 특정인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이 체화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해석·적용 역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제주일보 판례).

P. 132 추가

2. '타인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있을 것(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마. 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을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masmi 판례).

P. 158 수정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 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18 조 제 2 항).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강의소개

1. 기본강의 단과 - 후속무료강의 안내

| 기본강의 | 후속무료강의 |
|--------|--|
| 상표법 | 1차 상표법 OX 1차 상표법 진도별 기출 2차 기본강의 2차 기초GS |
| 디자인보호법 | 1차 디자인보호법 OX 1차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기출 |

2.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패키지

| 구성 | 단과수강료 | 패키지 할인 |
|--|-------|-------------------|
| 상표법 기본강의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 단과 후속무료강의도 제공 | 65만원 | 65만원 할인 : 15만원 |

3. 1차 상표법 T-pass

| 구성 | 단과수강료 | 패키지 할인 |
|------------|---------|--------|
| 상표법 전과정 | 172.5만원 | 100만원 |

4. 1차 디자인보호법 T-psaa

| 구성 | 단과수강료 | 패키지 할인 |
|---------------|-------|--------|
| 디자인보호법 전과정 | 70만원 | 35만원 |

5.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FULL 패키지 (인강 무제한 제공)

| 구성 | 단과수강료 | 패키지 할인 |
|----------------------------------|---------|---|
| 상표법 전과정 + 디자인보호법 전과정 | 247.5만원 | <div style="text-align: center;"> 110만원 ↓ 90만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20px;"> 선착순 100명 추가할인 </div> |

[수강신청]

1. 단과과정(1 번)

월비스 또는 변리사스쿨에서 수강신청가능

2. 패키지 과정(2 번 ~ 5 번)

월비스에서만 수강신청가능